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 관할 환경영향평가등의 대상사업(제77조제1항18호
관련)

1. 별표 2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중 주관 행정기관의 장이 중앙행정기
관의 장이 아닌 사업. 다만, 별표 2 제2호가목3)의 도시·군관리계획이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1호·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별표 3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중 승인기관장등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아닌 사업
3. 별표 4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중 승인기관의 장이 중앙행정기관
의 장이 아닌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대상사업 중 다음 각 목의 사업(주관 행정기관의 장 및
승인기관장등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경우를 포함한다)
 - 가. 별표 2 제2호가목3)의 도시·군관리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에너지 개발사업,
같은 호 다목의 에너지 개발사업 및 별표 3 제3호의 에너지 개발사업 중 송전
선로 및 옥외변전소에 관한 사업
 - 나. 별표 2 제2호더목 및 별표 3 제17호의 토석·모래·자갈·광물 등의 채취사
업
 - 다. 별표 3 제9호에 따른 하천의 이용 및 개발사업
 - 라. 별표 4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중 「전원개발촉진법」 제2조제2
호 및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라 설치하는 송전선로 관련 사업, 「한국
가스공사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가스사업 또는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국방·군사시설사업

비고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
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풍력 개발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역환경청장이 관할하는 환경영향평가등의 대상에서 제외한다.